

<내용량 변경, 무당·무가당 강조>  
**식약처, 슈링크플레이션·제로슈거  
 정보 제공 강화**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7.24.)
- 내용량 변경, 무당·무가당 강조 식품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표시 의무 등 신설
-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보장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인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7월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피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하는 한편,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①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②‘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③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④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① 2025. 1. 1.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내용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포함

②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6. 1. 1.부터는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장한다.

[예시] (기존) 제로슈거 → (개선 1)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000kcal)  
(개선 2) 제로슈거(감미료 함유,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 등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 [예시]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등

\*\* (현행 5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추가 17종) 스테비올배당체,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③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 1. 1.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주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있다.

[예시] (기존) 360ml(330kcal) → (개선) 360ml(**330kcal**)

④아울러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2026. 1. 1.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등 일반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히 조리해 섭취하는 식품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제조·가공기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나트륨(「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별첨)  
 2.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표시 개선 관련 질의·응답

|       |                      |     |     |                    |
|-------|----------------------|-----|-----|--------------------|
|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br>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철희 (043-719-2191) |
|       |                      | 담당자 | 사무관 | 최총렬 (043-719-2188)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현 (043-719-2181) |



청량<sup>+</sup>세상

국민의 건강  
내용물 차감 행위 차단  
보다 나은 **식약처**

#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질의·응답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 **붙임 2** 무당 또는 무가당 강조표시 개선 관련 질의·응답

### **Q1. 무당 표시는 어떤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 식품 제조 시 당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식품 100g(ml)당 0.5g 미만인 경우 '무당'이라고 강조할 수 있으며,
  - '무당'과 유사한 표현으로 '무설탕', '제로슈거', 'sugar free' 등이 있습니다.

### **Q2. 무가당 표시는 어떤 경우 사용 가능한가요?**

- 식품 제조 시 당류,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 당류를 첨가·포함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무가당'으로 강조할 수 있으며,
  - '무가당'과 유사한 표현으로 '설탕무첨가', 'no added sugar' 등이 있습니다.

### **Q3. 무당, 무가당 표시 제품에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당류를 낮추기 위해 감미료 등을 사용하고 '제로슈거'로 강조한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됨에 따라,
  - 소비자가 '제로슈거' 강조제품에 대해 당류가 없어 덜 달거나 열량까지 낮은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강조표시와 함께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 Q4. 어떤 제품에 추가 표시를 해야 하나요?

- (감미료를 추가 표시하는 경우)
  - 당류를 줄이기 위해 감미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고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강조한 제품이 해당합니다.
- (열량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 무당 또는 무가당으로 강조한 제품 중 당류는 줄였으나 열량까지 낮아지지 않은 제품(저열량\* 등 기준 미충족)이 해당합니다.
    - \* 저열량: 식품 100g당 40kcal 미만 또는 100ml당 20kcal 미만일 때

#### Q5.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무당'이나 '무가당' 강조표시 주위에 14포인트 이상으로 '감미료 함유'와 '000kcal'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을 표시해야 하며,
  - 강조표시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라면 주표시면에 가장 크고 굵게 표시되어 있는 강조표시 옆에 표시해야 합니다.

#### Q6. 감미료 함유로만 표시해야 하나요?

- 감미료 중 자일리톨, D-말티톨 등 당알코올류(10종)에 해당하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제품은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Q7. 제로슈거 제품 중 감미료 함유, 열량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언제 확인이 가능한가요?

- 금번 개정사항은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개정사항에 대해 업체가 제품에 반영하여 포장·용기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